

# 대학자체평가 규정(3-1-14)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에 따라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 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본 대학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교육기관 공시항목을 기본영역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 영역
2. 조직·운영 영역
3. 시설·설비 영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제5조(항목별 평가)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평가등급은 자체평가연구위원 및 평가주관부서가 따로 정한다.

제6조(평가시기) 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장 평가기구

제7조(기획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 구성은 총장이 위촉한다.

③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업무 총괄
2. 자체평가 역량향상
3.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
4.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

④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에 관한 업무는 평가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임기는 교내위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교외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연구
2. 대학자체평가 심사
3. 평가위원회 운영
4. 자체평가 지표와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결과의 개선대책에 대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자체평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연구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
2. 자체평가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검토
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0조(업무추진비) 자체평가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11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실제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실시한다.

1. 평가의 준비
2. 평가의 실시
3. 평가의 보고

제12조(평가계획 수립) 평가주관부서는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평가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계획 통보) 평가주관부서는 평가실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각 행정부서에 평가 계획을 통보하고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의 실시) 평가계획을 위하여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제15조(평가결과 보고) 평가주관부서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기준) 자체평가 기준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영역,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7조(평가결과 공시)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이하 "교육·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